#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307

발의연월일: 2022. 7. 5.

발 의 자:신영대·강훈식·고용진

김교흥 · 김병욱 · 김성환

김영진 · 김종민 · 민형배

양정숙 • 유정주 • 전재수

한준호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,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,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 법으로 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(안 제19조제15항 신 설). 법률 제 호

#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19조(부설주차장의	설치·지정)	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·지정)
① ~ ⑭ (생 략)		① ~ ⑭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<u>ⓑ</u>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
		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
		차장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주차
		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
		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
		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
		<u>보하여야 한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	<u>⑥</u> (현행 제15항과 같음)